

2021년 제16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

여수시 규칙 제785호

붙임 여수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785호

여수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낚시어선의 속력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으며, 낚시어선업자등은 이를 준수해서 낚시어선을 운항해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항행속력 제한해역, 대상선박 및 제한속력(제6조 관련)

1. 항내 제한 해역

속력 제한해역	대상선박 및 제한속력	비 고
<p>다음 구간별 각호의 기점(세계측지계 WGS-84)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p> <p>1. 소호항</p> <p>(1) 북위 34° 44 ' 20 "</p> <p> 동경 127° 39 ' 04 "</p> <p>(2) 북위 34° 44 ' 26 "</p> <p> 동경 127° 39 ' 48 "</p> <p>2. 국동항</p> <p>(1) 북위 34° 43 ' 12.92 "</p> <p> 동경 127° 42 ' 16.16 "</p> <p>(2) 북위 34° 43 ' 10.00 "</p> <p> 동경 127° 42 ' 17.00 "</p> <p>(3) 북위 34° 43 ' 14.40 "</p> <p> 동경 127° 42 ' 30.00 "</p> <p>(4) 북위 34° 43 ' 18.00 "</p> <p> 동경 127° 42 ' 43.20 "</p> <p>(5) 북위 34° 43 ' 11.70 "</p> <p> 동경 127° 42 ' 55.08 "</p> <p>(6) 북위 34° 43 ' 13.80 "</p> <p> 동경 127° 43 ' 03.00 "</p> <p>(7) 북위 34° 43 ' 16.80 "</p> <p> 동경 127° 43 ' 06.00 "</p> <p>(8) 북위 34° 43 ' 23.40 "</p> <p> 동경 127° 43 ' 30.90 "</p> <p>(9) 북위 34° 43 ' 36.00 "</p> <p> 동경 127° 43 ' 57.90 "</p> <p>(10) 북위 34° 43 ' 46.25 "</p> <p> 동경 127° 43 ' 55.10 "</p>	<p>대상선박 : 낚시어선</p> <p>제한속력</p> <p>1. 소호항 : 10노트 이하</p> <p>2. 국동항 : 10노트 이하</p> <p>※ 속력 : 대지속력</p>	<p>※ 소호·국동항 (육지방향) 해역</p>

2. 항로 제한 해역

속력 제한해역	대상선박 및 제한속력	비 고
<p>다음 각 호의 기점(세계측지계WGS-84)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인근을 지나는 해역</p> <p>(1) 북위 34° 43′ 11.70″ 동경 127° 42′ 55.08″</p> <p>(2) 북위 34° 36′ 42″ 동경 127° 42′ 27″</p> <p>(3) 북위 34° 36′ 40″ 동경 127° 43′ 11″</p> <p>(4) 북위 34° 35′ 49″ 동경 127° 44′ 15″</p> <p>(5) 북위 34° 35′ 4″ 동경 127° 45′ 54″</p> <p>(6) 북위 34° 34′ 12″ 동경 127° 46′ 29″</p> <p>(7) 북위 34° 34′ 27″ 동경 127° 44′ 59″</p> <p>(8) 북위 34° 33′ 38″ 동경 127° 45′ 30″</p>	<p>대상선박 : 낚시어선</p> <p>제한속력</p> <p>1. (3)~(4) 구간 : 10노트이하</p> <p>2. 그 외 구간 : 15노트이하</p> <p>※ 속력 : 대지속력</p>	<p>(1) 야도</p> <p>(2) 송도</p> <p>(3) 송도 ~ 돌산항 협수로</p> <p>(4) 화태도 ~ 돌산사이</p> <p>(5) 대항간도 ~ 작금 사이</p> <p>(6) 소항간도 ~ 성두 사이</p> <p>(7) 대항간도 ~ 소두라도 사이</p> <p>(8) 소항간도 ~ 금오도 사이</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 (안전운항 및 질서유지)</p> <p>① ~ ⑥ (생략)</p> <p>⑦ <u>남시어선업자등은 여수시 국동·소호항 항·포구에서 돌산읍 군내리 송도 인근 해역까지와 남면 횡간리 소횡간도 인근 해역까지는 15노트 이하로 운항하여야 하고,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에 위창산 여수수협 위관장과 송도 사이의 협수로를 지날 때와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예교마을앞(가두리양식장)에서 화태대교까지는 10노트 이하로 운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항행속력 제한해역은 별표 2와 같다.</u></p>	<p>제6조 (안전운항 및 질서유지)</p> <p>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u>남시어선의 속력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으며, 남시어선업자등은 이를 준수해서 남시어선을 운항해야 한다.</u></p>